

##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10월 17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10월 21일

3. 제안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의 신설과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것임.

4. 주요골자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신설 : 1건당 3,000원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금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충청북도에서는 1건당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1건당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불 임 :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